

2026년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기업승계)

1 가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 개편

구분	개편안	
‘가업’ 정의 신설	•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제외	
대상 업종	• 마트, 버스·택시 운송, 주차장, 창고, 병원, 약국 등 제외 [참고] * 명문장수기업, 백년소상공인 지정기업은 업종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심사위원회 신설	• 가업 해당 여부에 대한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적용 * [심사사항] ①가업 해당여부, ②업종변경 허용 여부, ③공제대상 업종조정 여부	
기간 요건	사전	• 피상속인 가업 경영 : 10년 → 상속공제 30년, 증여 20년 * 피상속인 경영 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상속인 가업 종사 : 2년 → 5년
	사후	• 사후관리 : 5년 → 상속공제 10년*, 증여 10년 * 피상속인 경영 기간 20~30년 : 10년+(30년-피상속인 경영 기간)
업종 변경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원칙적 제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시 인정	
공제 한도	• ^{10년}300억, ^{20년}400억, ^{30년}600억 → 최대 1,000억(경영연수 × 20억)	
업종 겸업	•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인 경우에도 전체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 → 주업종-부업종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토지 공제	• 범위 : 건축물 바닥면적 3~7배 이내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이내 • 한도 : 신설 1㎡당 1,000만원	

* 적용시기 :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②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 피승계 기업의 주식·출자지분(주식 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구분	개편안
매도자	- 특례 :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20% 감면(경영연수 × 5천만원) - 요건 : (기 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매도인)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최대출자자자)
매수자	- 특례 :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최대 연 5억) - 요건 : 매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10년 이상 계속경영 또는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사후관리 : 승계받은 자산·지분 및 고용 유지, 사업 계속 등
적용기간	• '28.1.1. ~ '30.12.31.

* 적용시기 :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

절차	주요 내용
주가 누르기 요건 해당 (① 또는 ②)	① 최근 13반기중 12반기(6년)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 ② (행위) 최근 1년 기업가치에 부정적 행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 하락) 현행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 대비* 30% 이상 하락 * 최근 6개월간·1년간·2년간·3년간 각각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대비
심의회 의결	평가심의회위원회 심의·의결 통해 주가 누르기 여부 확정
평가기간 확장 또는 할증	① Max{최근 6개월간·1년간·2년간·3년간·4년간·5년간·6년간·6년 6개월간 각각의 증가 평균액, 현행 평가방법 ×1.3} ② Max{최근 6개월간·1년간·2년간·3년간 각각 각각의 증가 평균액}

* 적용시기 :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참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대분류	업종코드	
가. 농업, 임업 및 어업(A)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B)	05100	석탄 광업
	06100	철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 제조업(C)	* 전체	제조업. 단, 담배제품 제조업(12000)은 제외
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35112	수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5	풍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마.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2	축산 분뇨 처리업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바. 건설업(F)	41121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41122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4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5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사. 도매 및 소매업(G)	45211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45213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 정밀 기기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4610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46104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46105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46106	기계 및 장비 중개업
	46107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
	46311	과실류 도매업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46313	육류 도매업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463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46324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46326	조미료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46332	비알코올음료 도매업
	46413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46415	속옷 및 잠옷 도매업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46462	악기 도매업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46522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31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3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46592	의료기기 도매업
	46593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4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46595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96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46622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46733	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6741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46742	직물 도매업
	46750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47411	남자용 겹옷 소매업
	47412	여자용 겹옷 소매업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5	한복 소매업
	47416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아. 운수 및 창고업(H)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2	선박관리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 숙박 및 음식점업(I)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50	제과점업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62	치킨 전문점
	56191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한식 일반 음식점업(56111)부터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56199)의 경우 음식을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업(J)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032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1210	유선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물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광고업
	71392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75210	여행사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파. 교육 서비스업(P)	85110	유아 교육기관
	85650	직원훈련기관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90121	연극단체
	90191	공연 기획업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비고: 위 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